



시 보

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namwon.go.kr

제57호 2023. 12. 1(금)

선 람	기관의 장

고 시

○ 남원시 고시 제2023-173호 사석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-----1

공 고

○ 남원시 공고 제2023-2362호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-----4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남원시 고시 제2023-173호

사석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『자연재해대책법』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(변경)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3년 12월 01일

남 원 시 장

1.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(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 내용

지구명	위 치	지정개요				지 정 사 유	비고
		유형	등급	면적(㎡)			
				당초	변경		
사석지구 (변경)	전라북도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2112번지 일원	침수 위험	나	163,280	1,224,000 (+1,060,720)	· 심진강 계획홍수위 보다 낮은 저지대로 수위상승시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한 침수피해 발생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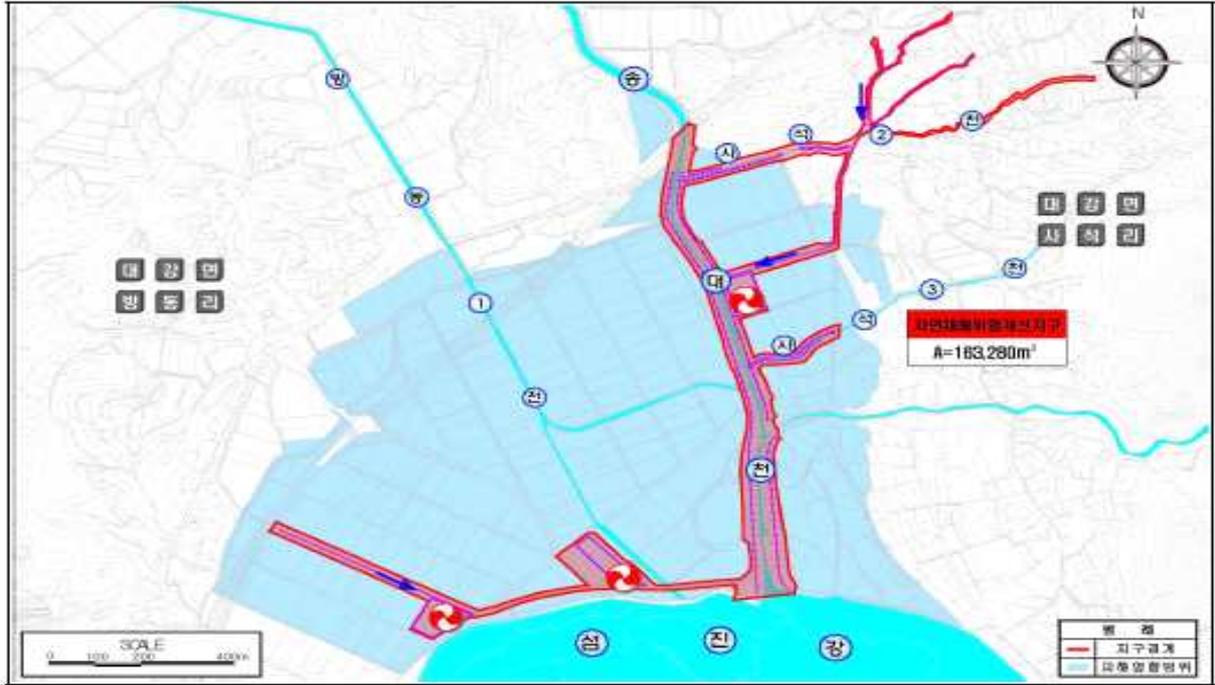
※ 지정 면적 변경 근거

-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중앙 전문가 의견 반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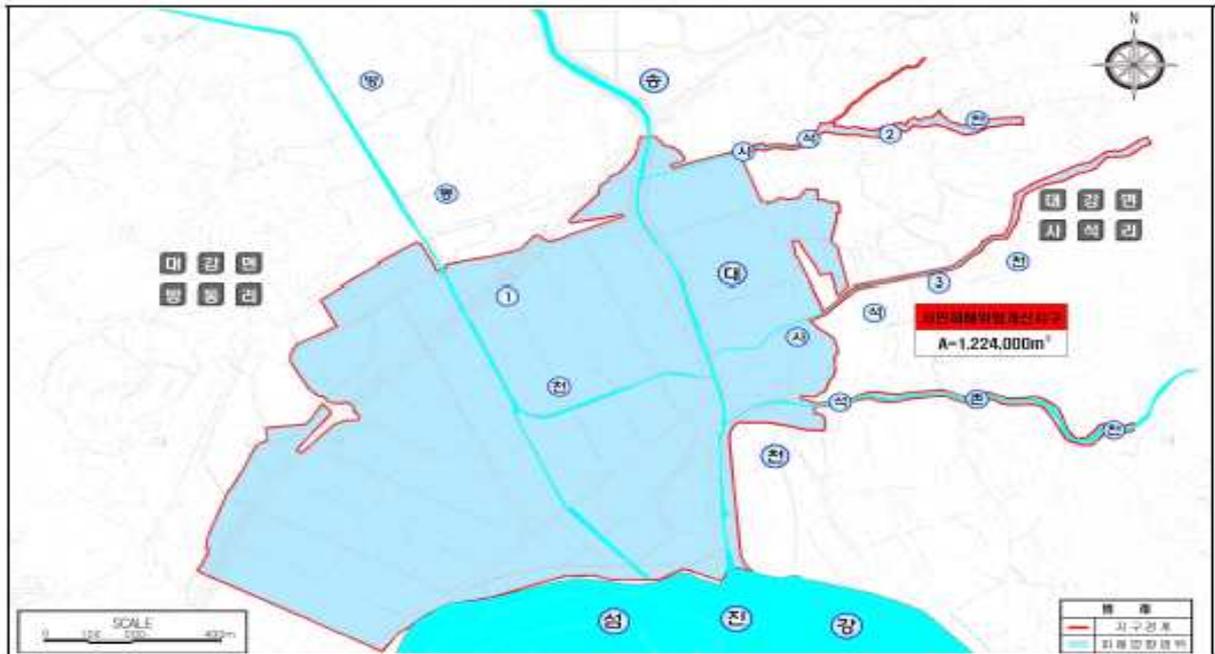
2. 기 간 :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5항에 따른 지정해제시까지

3.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형도면(변경)

지형도면(당초)



지형도면(변경)



남원시 공고 제2023 - 2362호

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공고문

『남원시 건축 조례』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『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』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1월 27일

남 원 시 장

1. 개정이유

- 상위법령인 「건축법 시행령」, 「건축법 시행규칙」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에 운영상 미비점 개선·보완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『건축법 시행규칙』개정에 따라 관련 건축허가 수수료 위임 인용 조항 및 문구 변경(안 제19조)
- 가설건축물의 연장 횟수 지정 및 면적 변경(안 제24조)
 - 무분별한 가설건축물의 연장으로 임시적이 아닌 영구적으로 사용되는 일부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최대 연장 횟수를 지정 및 면적변경
- 『건축법 시행령』개정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(안 제35조)
 - 층간소음 및 설비·소방 기준 등 건축기준 강화에 따라 건축물의 층

고가 불가피하게 높아지게 되어 주거지역 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을 9m에서 10m로 완화

3. 입법예고기간 : 2023. 11. 27. ~ 2023. 12. 18. (21일간)

4. 의견제출

가.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(참조:건축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 제출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)
- (2) 의견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할 곳

- (1) 우편번호 : 55738
- (2) 주 소 :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, 남원시청 건축과

라. 의견 제출 방법

- 서면, 전화(063-620-6582), 팩스(063-620-6719), 남원시 홈페이지(<http://www.namwon.go.kr/>), 직접 방문 등

5. 기 타

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건축과(063-620-658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6.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: 붙임

의견제출서

1. 의견제출 목록		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관한 의견
2. 제출자	성명(명칭)	
	주 소	
3. 의 견		
4. 기 타		
<p>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(의견제출 및 처리)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23년 월 일</p> <p>의견서 제출인 주 소 : 성 명 : (서명 또는 인) 전 화 :</p> <p>남원시장 귀하</p>		
비 고	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. 2.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 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: 2023. 10. .
 제출자: 남원시장
 제안설명자: 건축과장

1. 개정이유

상위법령인 「건축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에 운영상 미비점 개선·보완

2. 주요내용

- 가. 건축허가 수수료 위임 조항 정비 (안 제19조)
- 나. 가설건축물의 연장 횟수 지정 및 면적 변경(안 제24조)
 - 무분별한 가설건축물의 연장으로 임시적이 아닌 영구적으로 사용되는 일부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최대 연장 횟수를 지정 및 면적변경
- 다.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(안 제35조)
 - 층간소음 및 설비·소방 기준 등 건축기준 강화에 따라 건축물의 층고가 불가피하게 높아지게 되어 주거지역 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을 9m에서 10m로 완화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건축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·시행규칙
- 나. 그 밖의 사항
 - 1) 입법예고

- 기 간: 2023. 10. . ~ 2023. 11. . (20일간)

- 결 과:

2) 비용추계서: 비 추계대상

3) 규제예비심사: 완료

4) 성별영향평가: 완료

5) 부패영향평가: 완료

남원시 조례 제 호

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1항 본문 중 “법 제17조제2항”을 “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”로, “납부하여야”를 “내야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납부하지 아니한다”를 “그렇지 않다”로 한다.

제2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영 제15조제7항에 따라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횡수에 관계없이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횡수는 다음과 같다.

- 1. 영 제15조제5항제4호의 경우: 3회
- 2. 영 제15조제5항제8호의 경우(단, 농·어·임업용 임시창고는 제외한다): 5회

제35조제1항 본문 중 “9미터”를 “10미터”로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축조신고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횡수는 시행일 이후 최초 연장부터 적용한다.

[별표 3] <개정 2010.4.27., 2014.4.2., 2017.6.16., 2020.2.5.>

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(제24조 관련)

용 도	구 조	면 적	허용지역	기타
주차장	철골조립식	제한 없음	경관지구는 불가	1층 및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한정함
화 원	철골조립식	100제곱미터 이하	경관지구는 불가	1층 및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한정함
관리사무실 (주차장, 화원, 체육시설)	철골조립식 또는 컨테이너	30제곱미터 이하	경관지구는 불가	1층 및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한정함
기계보호시설	철골조립식	300제곱미터 이하	경관지구는 불가	1층 및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한정함
차양시설, 비가리개시설	제한없음 (다만,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 조가 아닐 것)	제한없음	제한없음	시장 환경을 위하여 지정·공고한 기존 재래시장과 「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것에 한정함 (소화활동소방차 진입 등 「소방관 련법」 및 「도로법」 그 밖의 관련법 에 저촉사항 없는 것)
창고용, 간이포장용, 간이수선작업 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,창고에 설치하는 시설	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 조가 아닌 것)	400제곱미터 이하	공장, 창고부지내	천막형태가 아닌 일정 내구성을 갖춘 구조 허용(「건축법」 및 「소방 관련법」 등 그 밖의 관 련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)

※ 공통사항

- 1) 옥상부분에는 설치 불가(단, 공장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)
- 2) 민법 제242조의 규정을 적용함
- 3) 존치기간은 3년 이하로 하되 미관상 지장이 없는 경우로 시장이 존치기간을 연
장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장 가능

붙임 관계 법령

■ 「건축법 시행규칙」

제10조(건축허가 등의 수수료) ①법 제11조·제14조·제16조·제19조·제20조 및 제8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. 다만,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. <개정 1996. 1. 18., 2006. 5. 12., 2008. 12. 11., 2022. 11. 2.>

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바닥면적을 산정할 수 없는 공작물을 축조하기 위하여 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대수선의 범위 또는 공작물의 높이 등을 고려하여 건축조례로 따로 정한다. <신설 2008. 12. 11.>

③ 삭제 <2022. 11. 2.>

[제목개정 1999. 5. 11., 2006. 5. 12.]

■ 「건축법 시행령」

제15조(가설건축물)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. <개정 2012. 4. 10., 2014. 10. 14.>

1.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
2.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. 다만, 도시·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3. 전기·수도·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
4. 공동주택·판매시설·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

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

설에 대하여는 법 제46조 및 법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도시·군계획 예정 도로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부터 제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2. 4. 10.>

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“재해복구, 흥행, 전람회,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09. 6. 30., 2009. 7. 16., 2010. 2. 18., 2011. 6. 29., 2013. 5. 31., 2014. 10. 14., 2014. 11. 11., 2015. 4. 24., 2016. 1. 19., 2016. 6. 30.>

1.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
2.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, 가설전람회장, 농·수·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
3.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
4. 전시를 위한 건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
5.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·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(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)로서 안전·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
6.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
7.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
8.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·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(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. 다만,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)
9.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·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·어업용

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

10.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, 가축분뇨처리용, 가축운동용,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(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)구조 건축물

11. 농업·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, 가축양육실

12. 물품저장용, 간이포장용,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(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)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

13. 유원지,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·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

14.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

15.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

16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

⑦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,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횡수별 3년의 범위에서 제5항 각 호의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횡수만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제5항제3호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14. 10. 14., 2014. 11. 11., 2021. 11. 2.>

⑧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 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10. 14., 2018. 9. 4.>

⑨ 제8항 본문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

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주어야 한다.

제86조(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)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(正北)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7. 6., 2023. 9. 12.>

1.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: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.5미터 이상
2.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: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

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

◇ 비용추계 대상 여부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**비용추계 대상이 아님.**

※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

제3조(작성대상)

-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.
-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.
- ③ 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.
-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단,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- 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
- 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- 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이 곤란한 경우

규제영향분석서

I.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(「행정규제기본법 제7조」)

1. 규제사무명	남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	2. 구 분													
		신설		강화	○	존속 기한 연장									
3.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	안전건설국 건축과 국 장 : 지방서기관 이영근 과 장 : 지방시설사무관 양근식 담 당 : 지방시설주사 이창훈 작성자 : 지방시설주사보 태순용														
4. 근거법령 등	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5조(가설건축물)제5항제16호 및 제7항														
5.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등	- 피규제자 : 가설건축물 건축주														
6. 규제 존속기한	- 무분별한 가설건축물의 연장으로 임시적이 아닌 영구적으로 사용되는 일부 가설 건축물에 대하여 최대 연장 횟수를 지정하고 면적을 변경하여 체계적인 가설건축물 건축을 유도하고자 존속기한을 두지 않고자 함														
7. 종전 규제 및 신설(강화) 규제의 내용	《종전규제》 ○ 건축조례 제24조(가설건축물) ⑤ <신 설> ○ 건축조례 [별표 3](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)														
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5%;">용도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구조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면적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허용지역</th> <th style="width: 40%;">기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창고용, 간이포장용,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에 설치하는 시설</td> <td>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 트조가 아닌 것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한없 음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공장부지내</td> <td>천막형태가 아닌 일정 내 구성을 갖춘 구조 허용 (「건축법」 및 「소방 관 련법」 등 그 밖의 관련법 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		용도	구조	면적	허용지역	기타	창고용, 간이포장용,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에 설치하는 시설	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 트조가 아닌 것)	제한없 음	공장부지내	천막형태가 아닌 일정 내 구성을 갖춘 구조 허용 (「건축법」 및 「소방 관 련법」 등 그 밖의 관련법 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)
	용도	구조	면적	허용지역	기타										
창고용, 간이포장용,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에 설치하는 시설	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 트조가 아닌 것)	제한없 음	공장부지내	천막형태가 아닌 일정 내 구성을 갖춘 구조 허용 (「건축법」 및 「소방 관 련법」 등 그 밖의 관련법 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)											
《개정규제》 ○ 건축조례 제24조(가설건축물) ⑤ 영 제15조제7항에 따라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는 다음과 같다. 1. 영 제15조제5항제4호의 경우: 3회 2. 영 제15조제5항제8호의 경우(단, 농·어·임업용 임시창고는 제외한다): 5회 ○ 건축조례 [별표 3](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)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5%;">용도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구조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면적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허용지역</th> <th style="width: 40%;">기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창고용, 간이포장용,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, 창고에 설치하는 시설</td> <td>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 트조가 아닌 것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00제곱 미터 이하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공장, 창고부지내</td> <td>천막형태가 아닌 일정 내 구성을 갖춘 구조 허용 (「건축법」 및 「소방 관 련법」 등 그 밖의 관련법 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		용도	구조	면적	허용지역	기타	창고용, 간이포장용,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, 창고 에 설치하는 시설	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 트조가 아닌 것)	400제곱 미터 이하	공장, 창고부지내	천막형태가 아닌 일정 내 구성을 갖춘 구조 허용 (「건축법」 및 「소방 관 련법」 등 그 밖의 관련법 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)	
용도	구조	면적	허용지역	기타											
창고용, 간이포장용,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, 창고 에 설치하는 시설	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 트조가 아닌 것)	400제곱 미터 이하	공장, 창고부지내	천막형태가 아닌 일정 내 구성을 갖춘 구조 허용 (「건축법」 및 「소방 관 련법」 등 그 밖의 관련법 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)											

II. 평가요소별 규제 영향분석

1. 규제의 필요성

가. 문제의 정의 및 발생원인

- 「건축법 시행령」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조례를 신설 및 개정하게 됨

나.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

- 현행법 상 가설건축물은 안전·관리부분에서 문제가 다수 발생함에도 존치 기간 내 연장 신청을 하면 특별한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함
-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상 구조 및 피난·방화 등에 대한 관련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소방법령 상에도 관리 대상이 아니므로 화재·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

2. 규제목적의 실현 가능성

가.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요소

- 가설건축물 설치 및 존치기간 연장 횟수 및 면적 관련사항 대하여 우리시 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본 규제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규제에 대한 반대나 사회적 제약요소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

나. 기술수준 기타 행정환경에 비추어본 실현 가능성

- 기술수준 등과 관련성 없음

3.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

가. 기존규제로 대체 가능 여부

- 「건축법 시행령」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조례를 신설 및 개정할 사항으로 대체 가능 불가

나. 규제외 다른 방법으로서의 목적달성 가능여부

- 무분별한 가설건축물 축조 및 존치기간 연장으로 인한 난개발 및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로 규제 외 다른 대안 없음
- 다. 유사한 기존규제와 중복여부 : 해당없음

4.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시민이 부담하여야 할

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

가. 규제의 비용분석

- 비용 발생 없음

나. 규제의 편익분석

- 현행법 상 가설건축물은 안전·관리부분에서 문제가 다수 발생함에도 존치 기간 내 연장 신청을 하면 특별한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함
-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상 구조 및 피난·방화 등에 대한 관련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소방법령 상에도 관리 대상이 아니므로 화재·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
- 이에 따라 일부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존치기간 연장횟수 및 면적에 대한 제한을 두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
다. 비용·편익의 비교 및 검토

- 규제로 인하여 공장 및 유통사업 측면에서는 다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, 가설건축물에 대해 안전관리 측면에서 제한을 두기 위함하므로 비용보다 편익이 클 것으로 판단됨

5. 규제의 시행이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*에 따른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

가.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비용 유발 여부 등 : 부

*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

제2조(중소기업자의 범위)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(이하 “중소기업시책”이라 한다)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(이하 “중소기업”이라 한다)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. 다만,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·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

가.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

나.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

2.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

3.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, 이종(異種)협동조합연합회(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
4.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 제2조에 따른 조합, 연합회,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
5.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, 사업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
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(小企業)과 중기업(中企業)으로 구분한다.

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. 다만,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·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.

6.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

가. 시장경쟁 제한요소 포함여부 : 부

나.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여부 : 여

7.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

가. 규제기준·절차의 명확성 등

-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5조(가설건축물)제5항제16호 및 제7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조례를 신설 및 개정하는 사항으로 규제기준·절차 등이 명확함

나.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

○ 법적근거 : 건축법

○ 건축법 상 존속기간이 없음에 따라 미설정

- 8.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·인력 및 예산의 소요
 - 비예산 사항이며, 기존의 행정조직을 활용하여 운영 가능
- 9.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·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
 -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존치기간 연장신고는 「건축법」에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적정함
- 10. 관련법령 및 참고자료
 - 건축법 시행령 제15조(가설건축물)제5항제16호 및 제7항

■ 「건축법 시행령」

제15조(가설건축물)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“재해복구, 흥행, 전람회,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16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

⑦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,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횡수별 3년의 범위에서 제5항 각 호의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횡수만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다만, 제5항제3호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 까지의 기간으로 한다.